

KT 환경경영 가이드라인

(KT Environmental Management Guidelines)

Contents

- I 사업장 환경경영 지침 (Site Environmental Guideline)

- II 제품·서비스 환경경영 지침 (Product & Service Environmental Guideline)

- III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지침 (GHG Emission Monitoring Guideline)

- IV 폐기물 관리 지침 (Waste Management Guideline)

- V 협력사 환경경영 지침 (Supplier Environmental Guideline)

- VI 밸류체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Value Chain GHG Emission Calculation Guideline)

- VII 유통물류 환경경영 지침 (Logistic Environmental Guideline)

- VIII 사회적 감축량 산정 지침 (Social Impacts of Carbon Emissions Guideline)

- IX 배출권 통합 및 분배 지침 (M&A Emission Management Guideline)

I 사업장 환경경영 지침

(Site Environmental Guideline)

1. 사업장 환경경영 지침
2. 사업장 환경경영시스템
3. 환경경영 리더십
4. 환경경영 프로세스

1. 사업장 환경경영 지침

사업장은 KT 전사 환경경영 정책 관련, 환경경영 방침을 준용한다.

사업장은 비즈니스를 통해 환경 보호와 환경 개선에 공헌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의 대상, 범위, 특성 및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환경경영 방침을 정의한다.

1.1 에너지 효율성

1.1.1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시설의 에너지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에너지 효율성 목표를 수립한다.

1.1.2 에너지 저감 아이템

사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저감 아이템을 발굴하고, 아이템을 적용한다.

1.1.3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 / 지열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고, 태양광 발전, 지열에너지 활용 시설을 구축하여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1.2 자원의 효율성

1.2.1 폐기물 관리

데이터센터 내 폐기물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매립/소각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1.2.2 폐기물 저감 아이템

폐기물 저감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적절한 폐기물 저감 아이템을 적용한다.

1. 사업장 환경경영 지침

사업장은 KT 전사 환경경영 정책 관련, 환경경영 방침을 준용한다.

사업장은 비즈니스를 통해 환경 보호와 환경 개선에 공헌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의 대상, 범위, 특성 및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환경경영 방침을 정의한다.

1.3 친환경 SCM (Eco-friendly SCM)

1.3.1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국제 기준의 환경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하며, 이를 위해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및 유지를 지속한다.

1.3.2 환경성과 관리

운영 전 과정 및 벨류체인의 환경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1.3.3 환경 교육

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사업장 환경경영시스템

2.1 조직 및 조직의 상황 이해

- 1) 사업장은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시 시장환경, 정부 규제/정책, 기술동향 등 센터의 경영 목표와 관련있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외부 및 내부 이슈를 파악하고 정의한다.
- 2) 이들 이슈에는 센터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여건을 포함한다.

2.1 조직 및 조직의 상황 이해의 <산출물>은 [결정된 내부 및 외부의 이슈]가 된다.

2.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이해

- 1) 사업장은 다음을 정의한다.
 - a.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 b. 이들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요구와 기대 (Ex. 요구사항)
 - c.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서 비롯된 센터의 준수 의무사항(법적 규제사항 포함)
- 2) 사업장은 이들 정보를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연중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

2.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이해의 <산출물>은 [결정된 조직의 이해관계자, 요구와 기대사항, 관련 준수 의무 사항]이 된다.

2. 사업장 환경경영시스템

2.3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 1) 사업장은 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의 경계와 적용가능성을 결정한다.
- 2) 이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 센터는 다음을 고려한다.
 - a. 2.1에 언급한 내외부 이슈
 - b. 2.2에서 언급한 준수의무사항
 - c. 센터의 부서단위, 기능 및 물리적 경계
 - d. 센터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
 - e. 관리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권한과 능력
- 3) 적용범위가 결정되면 이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환경경영시스템에 포함한다.
- 4) 이를 반영한 적용범위는 본 매뉴얼 “1장 적용범위”에 기술되어야 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이용 가능해야 한다.

2.4 환경경영시스템

- 1) 성과 목표를(환경성과 향상을 포함하는)를 달성하기 위해, 센터는 ISO 14001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여러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2)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할 때에는 2.1과 2.2에서 습득한 지식을 고려해야 한다.

3. 환경경영 리더십

3.1 리더십과 의지표명

- 1) 사업장의 장은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를 다음을 통해 표명하여야 한다.
 - a. 환경경영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책임을 짐
 - b. 환경방침과 환경목표가 수립**되었고, 환경방침과 환경목표가 조직의 전략방향과 상황에 정렬함을 보장
 - c.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통합되었음을 보장
 - d. 환경경영시스템의 가용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가용함을 보장
 - e. 효과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의 중요성과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의사소통
 - f. 환경경영시스템이 조직의 그 의도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을 보장
 - g.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 기여를 위한 소속기관의 직원을 지휘하고 지원함
 - h.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
 - i. 기타 관련 책임분야에 리더십이 적용될 때, 그들의 리더십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지원

3.2 환경방침

- 1) 사업장의 장은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환경방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 a.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의 성격(nature), 규모 및 환경영향을 포함한, **조직의 목표와 상황에 적합**해야 함.
 - b. 환경목표를 설정하는 틀을 제공할 것.
 - c. 조직활동과 관련이 있는 오염예방과 그 밖의 구체적인(specific)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 d. 조직의 준수의무사항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포함할 것.
 - e. 환경성과의 향상을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환경방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되어야 함.
 -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되어야 함.
 -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해야 함.

4. 환경경영 프로세스

4.1.1 일반사항

사업장은 4.1.1부터 4.1.4까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운영하여야 한다.

환경경영시스템을 기획할 때, 사업장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2.1과 관련된 이슈
- b. 2.2와 관련된 요구사항
- c.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그리고 환경측면(4.1.2 참조), 준수의무사항(4.1.3 참조) 그리고 2.1 및 2.2에 명시된 기타 이슈 및 요구사항과 관련된 리스크 및 기회를 규명(determine)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이를 통해 다음을 다룰 필요가 있다.

- 환경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줌.
- 조직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여건의 잠재성을 포함한 악영향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킴.
-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함.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내에서 사업장은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정의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리스크 및 기회
- 4.1.1부터 4.1.4에서 요구된(needed) 프로세스(계획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수준 정도)

4.1.2 환경측면

환경경영시스템의 결정된(defined) 적용범위 내에서 전과정 관점(life cycle perspective)을 고려하여, 사업장이 관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과 그와 연관된 환경영향을 규명(determine)하여야 한다.

환경측면을 규명(determine)할 때 사업장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새롭게 수립된 계획된 변경사항, 그리고 신규 또는 수정된(modified) 활동, 제품 및 서비스
- b. 비정상적인 조건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상상황

4. 환경경영 프로세스

사업장은 수립된 기준을 활용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측면, 즉, 중대한 환경측면을 정의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적절한 수준에서, 중대한 환경측면을 조직의 다양한 유관부서들과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다음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 환경측면 및 관련된 환경영향
- 조직의 중대한 환경측면을 규명 정의하는 데 사용한 기준
- 중대한 환경측면

4.1.3 준수의무사항

사업장은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 a. 환경측면과 관련된 준수의무사항을 규명(determine)하고 그것에 접근 (access)할 수 있어야 함.
- b. 이러한 준수의무사항이 어떻게 조직에 적용되는지를 규명(determine)하여야 함.
- c.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할 때, 이러한 준수의무사항을 반영(take into account)하여야 함.

사업장은 조직의 준수의무사항과 관련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4.1.4 조치 계획

사업장은 다음을 계획하여야 한다.

- a. 다음 사항을 다루기 위한 조치
 - 1) 중대한 환경측면
 - 2) 준수의무사항
 - 3) 4.1.1에서 파악된 리스크 및 기회
- b. 다음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
 - 1) 상기 조치를 어떻게 환경경영시스템 프로세스(4.2 참조)에 또는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실행할 것인가
 - 2) 이러한 조치의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러한 조치를 계획할 때, 사업장은 조직의 기술적 사항과 조직의 재무적, 운용상 및 사업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환경경영 프로세스

4.2.1 환경목표

사업장은 조직의 중대한 환경측면과 이와 관련된 준수의무사항 그리고 조직의 리스크와 기회를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계층에서 환경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목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환경방침과 일관성이 있음.
- b. (실행 가능할 경우) 측정 가능하여야 함.
- c. 모니터링되어야 함.
- d. 의사소통되어야 함.
- e. 해당되는 경우(as appropriate) 최신회되어야 함.

사업장은 환경목표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4.2.2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기획

조직의 환경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기획할 때, 사업장은 다음을 규명(determine)하여야 한다.

- a.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 b.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 c.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 d.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
- e. 조직의 측정 가능한 환경목표 달성에 대한 진척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포함하여, 어떻게 결과를 평가할 것인가

사업장은 조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II 제품·서비스 환경경영 지침

(Product & Service Environmental Guideline)

1. 제품·서비스 기획 및 관리
2. 제품·서비스 환경경영 성과평가
3. 제품·서비스 환경경영 개선

1. 제품·서비스 기획 및 관리

1.1 일반사항

제품·서비스 조직은 다음을 통하여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사업장 환경경영 지침> 4.1 및 4.2에 명시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 환경경영매뉴얼
- 내부심사 업무지침
-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 업무지침
- 각 BM별 업무처리지침

Life cycle 관점에서, 제품·서비스 조직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 및 개발 전과정에서 환경 요구사항이 다뤄질 수 있도록 관리방법(controls)을 적절한 수준에서(as appropriate) 수립
-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에 대한 환경 요구사항을 적절한 수준에서(as appropriate) 결정
- 제품이나 서비스의 운송 또는 배송, 사용, 사용 후 처리 및 최종 폐기와 관련된 잠재적인 중대한 환경영향에 관련된 정보 제공 필요성 고려

제품·서비스 조직은 프로세스가 계획된 대로 실행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1.2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제품·서비스 조직은 파악된 잠재적인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품·서비스 조직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비상상황으로부터 환경 악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계획
- 실제 비상상황에 대응
- 비상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적절한 조치 시행
-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계획된 대응 조치를 주기적으로 연습(test)
- 비상사태 발생 또는 연습(test) 이후, 주기적으로 대응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개정
- 제품·서비스 조직 인력 및 이해관계자에게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정보와 교육훈련을 적절한 수준에서(as appropriate) 제공

제품·서비스 조직은 프로세스가 계획된 대로 실행됨을 확신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제품·서비스 환경경영 성과평가

2.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2.1.1 일반 사항

제품·서비스 조직은 조직의 환경성과를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품·서비스 조직은 다음을 결정하여야 한다.

- a) 무엇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는가
- b)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방법
- c) 조직의 환경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적절한 지표
- d) 언제 모니터링 및 측정을 수행할 것인가
- e) 언제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가

제품·서비스 조직은 적절한 수준에서(as appropriate), 검증된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품·서비스 조직은 조직의 환경성과와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품·서비스 조직은 관련 환경성과 정보를 조직의 소통 프로세스와 조직의 준수사무사항의 요구에 따라 내부와 외부에 의사소통 하여야 한다.

제품·서비스 조직은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결과의 증거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2.1.2 준수평가

제품·서비스 조직은 제품·서비스 조직의 준수사무사항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품·서비스 조직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준수평가의 빈도를 결정
- b) 준수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 c) 준수사무사항에 대한 이해

제품·서비스 조직은 준수평가 결과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여야 한다.

2. 제품·서비스 환경경영 성과평가

2.2 내부심사

2.2.1 일반 사항

제품·서비스 조직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심사 업무지침에 따라 내부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환경경영시스템이 다음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 1)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조직 자체의 요구사항
 - 2) 환경경영 매뉴얼의 요구사항
- b) 환경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 여부

2.2.2 내부심사 프로그램

제품·서비스 조직은 내부심사의 빈도, 방법, 책임, 계획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내부심사 업무지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내부심사 업무지침을 수립할 때 관련 환경적 중요성, 변경사항 및 이전 심사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품·서비스 조직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각 심사별 심사기준 및 범위를 결정
- b) 심사 프로세스의 객관성과 공정성(impartiality)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수행
- c) 심사결과가 관련 경영자에게 보고됨을 보장

제품·서비스 조직은 심사프로그램의 실행과 심사결과의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품·서비스 환경경영 성과평가

2.2 경영검토

제품·서비스 조직의 장은 조직의 적합성(suitability), 적절성(adequacy) 및 효과성(effectiveness)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영검토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이전 경영검토에서 취한 조치 현황
- b) 다음의 변경사항
 - 1)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이슈
 - 2) 준수의무사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니즈(needs)와 기대
 - 3) 중대한 환경측면
 - 4) 리스크와 기회
- c) 환경목표의 달성 정도
- d) 다음 항목을 포함한 조직의 환경성과에 대한 정보
 - 1) 부적합 및 시정조치
 - 2)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 3) 준수의무사항 충족
 - 4) 심사결과
- e) 자원의 적절성(adequacy)
- f) 불만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 g) 지속적 개선 기회

경영검토의 결과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suitability), 적절성(adequacy) 및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결론
- 지속적 개선 기회와 관련된 의사결정
- 자원을 포함한 환경경영시스템 변경 필요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 환경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
- 환경경영시스템과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와의 통합체계(integration)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
- 제품·서비스 조직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영향

제품·서비스 조직은 경영검토 결과의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제품·서비스 환경경영 개선

3.1 일반사항

제품·서비스 조직은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 가능한 기회를 정의하고 필요한 활동을 실행하여야 한다.

3.2 부적합 및 시정조치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제품·서비스 조직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부적합에 대응하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을 수행
 - 1) 부적합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2) 결과(consequences) 처리(환경 악영향의 완화를 포함)
- b) 부적합이 재발하거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평가
 - 1) 부적합을 검토
 - 2) 부적합의 원인을 규명(determining)
 - 3) 유사한 부적합이 존재하는지,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규명(determining)
- c)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
- d) 취해진 모든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검토
- e) 필요한 경우 환경경영시스템을 변경

시정조치는 환경영향을 포함하여 발생한 부적합 영향의 중요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품·서비스 조직은 다음의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 부적합의 성격(nature) 및 취해진 모든 후속적인 조치
- 모든 시정조치의 결과

3.3 지속적 개선

제품·서비스 조직은 환경성과의 개선을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의 적합성(suitability), 적절성(adequacy) 및 효과성(effectiveness)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III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지침 (GHG Emission Monitoring Guideline)

1. 조직경계 규정
2. 조직경계 결정 방법
3. 공정도
4. 시설별 측정기기 관리
5. 활동자료 모니터링 방법
6.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1. 조직경계 규정

1.1 조직경계 결정 원칙

관리업체는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조직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고려한 운영통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운영통제 범위에 의한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리업체는 사업장의 지리적 경계, 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조직의 변경, 경계 내 상주하는 타 법인, 모니터링 관련 시설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 및 시설관리의 주체와 해당 활동에 의한 경제적 이익 등의 귀속 주체를 파악한다.

1.2 조직경계 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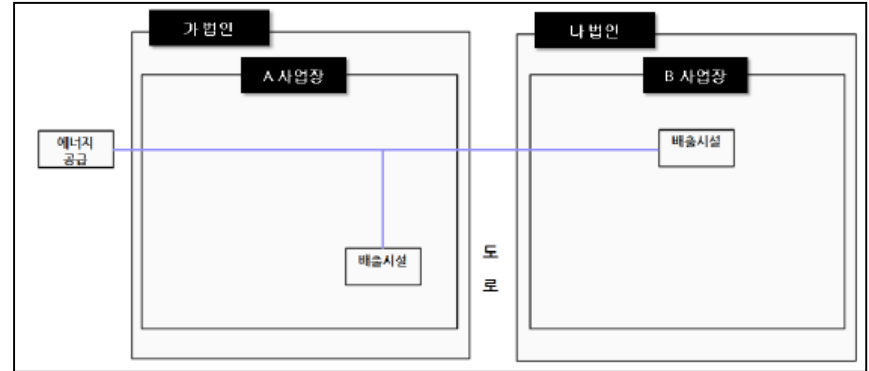
조직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의 특징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고 조직경계 결정과 관련된 설명을 모니터링 계획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다수 관리업체에서 에너지를 연계하여 사용 시 조직경계 결정방법
- 2) 타 법인이 조직경계 내에 상주하는 경우 조직경계 결정방법
- 3) 건물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2. 조직경계 결정 방법

2.1 조직경계 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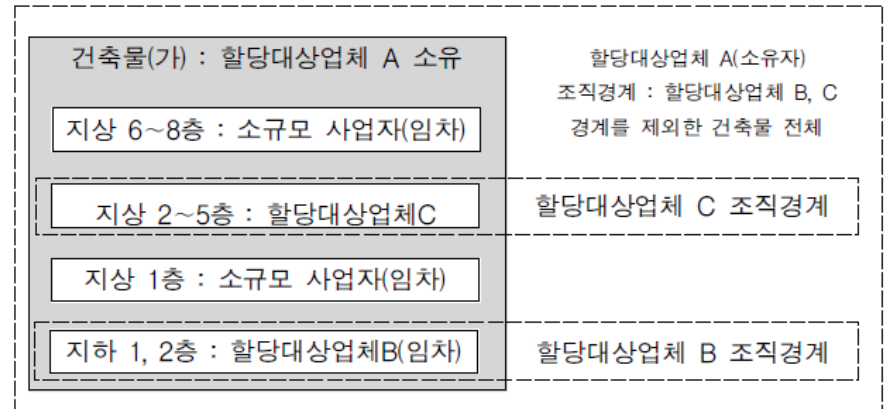
다수의 관리업체에서 에너지를 연계하여 사용하더라도 법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관리업체는 별도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도록 경계를 설정하여야 함



2.2 건물의 조직경계 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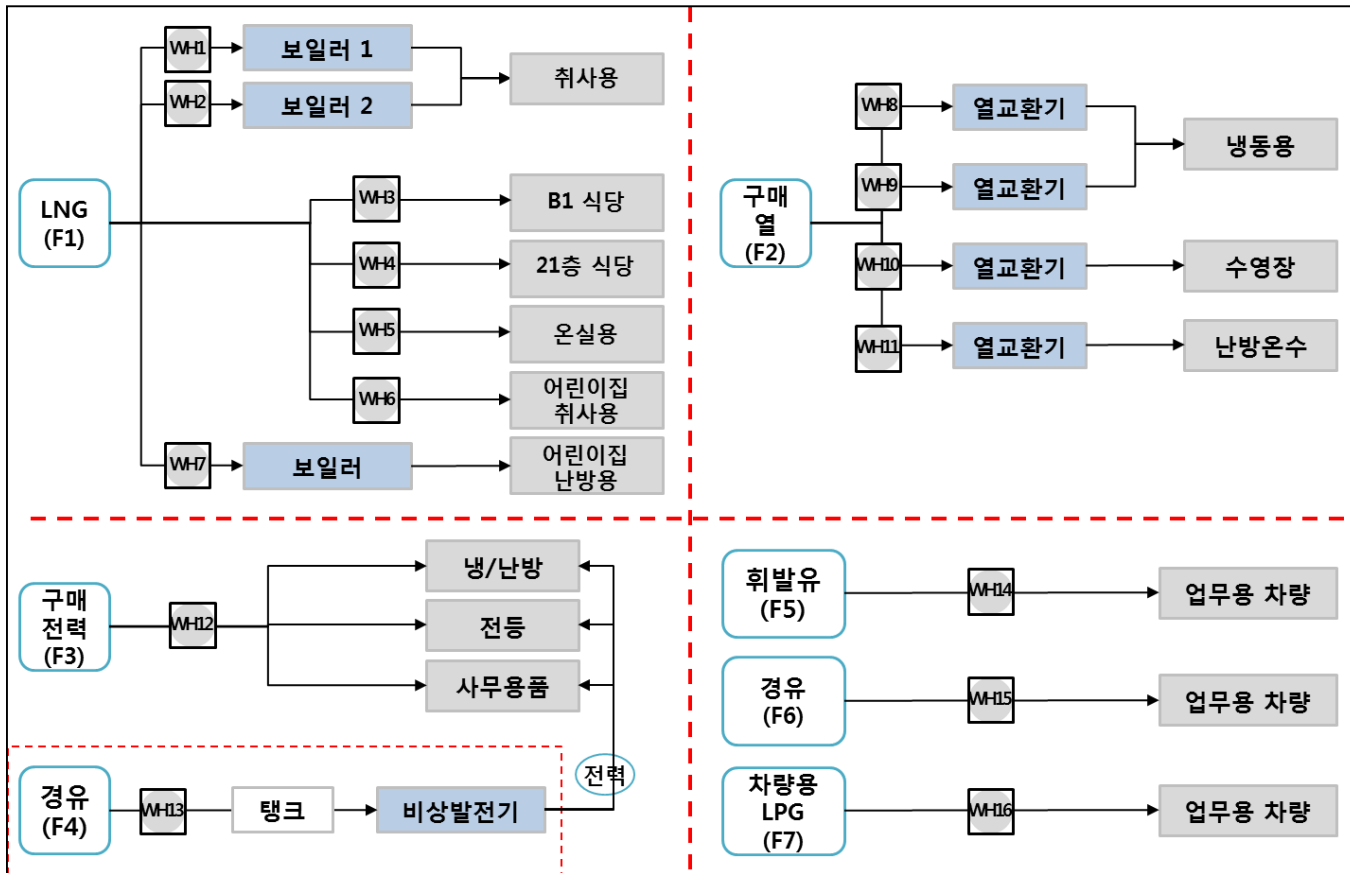
건축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함

할당대상업체 A의 건물에 타 할당대상업체(B, C 등)가 임차할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 B, C가 입점한 부분의 관리주체는 각 할당대상업체(B, C)이며, 할당대상업체 A의 관리범위는 할당대상업체 B, C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됨



3. 공정도

연료 흐름, 온실가스 흐름에 따라 공정도 작성



4. 시설별 측정기기 관리

4.1 측정기기 기호 및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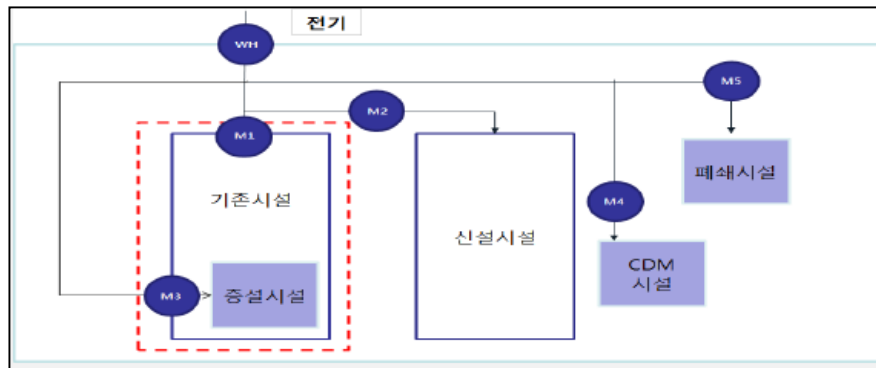
기호	세부 내용
WH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량을 결정하는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측정기기로써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정계량기
FL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는 측정기기
FL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이나,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측정기기

4.2 측정기기 표현 방법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측정기기는 괄호안에 FL이라 표현

하나의 배출시설에 동일한 측정기기의 기호가 2개 이상인 경우 기호 뒤에 수를 붙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

배출시설의 모니터링 도식도의 측정기기 기호와 측정지점 기호에 기입한 기호가 다른 경우 측정지점 기호에 기입한 기호 다음에 도식도 내의 기호를 괄호로 표시하여 서로 매칭되도록 해야 함



5. 활동자료 모니터링 방법

5.1 측정기기 이름 및 종류

측정기기의 이름 및 종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량기 종류 및 계측기 사양서 등을 참조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의 종류	정기검사 대상 여부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의 종류	정기검사 대상 여부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저울 및 판저울, 전기식저울)	○	눈새김탱크	○
분동	-	눈새김탱크크로리	○
이동식 축중기	○	적산열량계	-
가스미터	-	전력량계	-
수도미터	-	곡물수분측정기	-
오일미터	-	속도측정기	-
주유기	-	체온계	-
LPG미터	-	혈압계	-

5.2 계측기 관리

계측기의 이름, 일련번호, 측정범위, 검사주기, 형식승인 유무 등 관리

측정유체	clean gases
표시	3 1/2 digit LCD
측정범위	0 ~ 50 kWh
고급범위	0 ~ 10 mL/min
	0 ~ 20 mL/min
	0 ~ 50 mL/min
	0 ~ 100 mL/min
	0 ~ 200 mL/min
	0 ~ 500 mL/min
	0 ~ 1 L/min
	0 ~ 2 L/min
	0 ~ 5 L/min
	0 ~ 10 L/min(공사용)
정밀도	전체 범위에서 ± 1.5% (15~20°C 및 0.4~4.1bar) 전체 범위에서 ± 1.0% (고급범위)
재형성	전체 범위에서 ± 0.5%
온도계수	전체 범위에서 0.15% / °C
압력계수	전체 범위에서 0.01% / psi
응답속도	연속측정의 경우 : 800 ms time
상대습도	70%
최대내압	1,000 psig (70 bars)
최대사용온도	5 ~ 50°C
Leak Integrity	1 x 10 ⁻³ sm ³ /sec He max to the outside environment
출력	linear DC 0 ~ 5 V

6.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6.1 산정등급 기준

온실가스 간접 배출을 제외한 모든 배출활동의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은 직접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적용

배출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량 총합의 5% 미만인 보조연료 등은 해당 배출시설 최소산정등급의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Tier적용 완화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하는 배출활동의 배출량 총합이 25,000톤 미만이어야 함

6.2 다수 배출시설에 동일한 배출활동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산정등급이 상이한 다수의 배출시설에 동일한 연료 및 원료가 투입되고 동 연료 및 원료가 동일한 배출흐름을 보인다면 동일한 매개변수와 측정, 분석 결과값을 적용하여야 함. 이와 같은 경우 다수의 배출시설 중 최소 산정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야 함

동일한 연료 및 원료임에도 배출원 및 배출흐름이 상이한 경우 각각의 배출시설별로 산정 등급을 적용하여야 함(예: 부생가사는 동급라인별로 별도의 매개변수 및 측정, 분석 필요)

6.3 기타 참고 사항

지침 개정으로 인해 Tier2 배출계수가 Tier1으로 이동된 배출활동

- 이동연소(항공), 시멘트 생산의 폐기물 연료 연소, 석유화학 제품, 합금철 생산, 납 생산, 전자산업의 반도체/LCD/PV

IV 폐기물 관리 지침

(Waste Management Guideline)

1. 일반 사항
2. 불용결정 및 불용품관리 기준
3. 불용품 분류
4. 유가불용품 처리
5. 처리 방법
6.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폐기물 관리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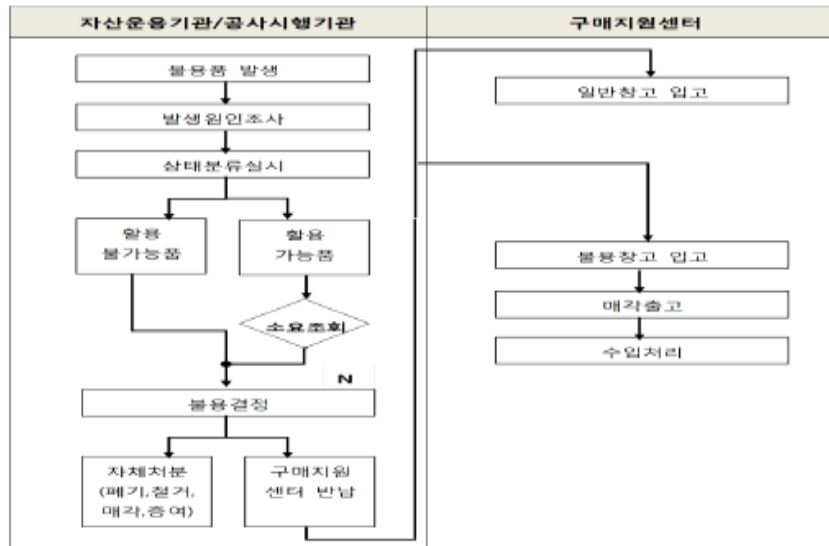
1. 일반 사항

전사 불용품 매각 및 관리 기준은 물류업무매뉴얼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불용결정 및 불용품 관리의 적용지침을 따른다.

2. 불용결정 및 불용품관리 기준

발생유형	상태분류	불용결정 및 관리	적용지침
고정자산	자산운용기관	자산운용기관	재무업무매뉴얼 OA/OE 자산 운영매뉴얼 등
고정자산 철거공사	공사시행기관 자산운용기관	공사시행기관 자산운용기관	자산운용기관 불용관리기 준 또는 관련 문서 등
공사잔품	공사시행기관	공사시행기관	
상품, 저장품	자산운용기관	자산운용기관	
부외자산	자산운용기관	자산운용기관	

2.1 불용결정 절차



폐기물 관리 지침

3. 불용품 분류

불용품은 처리가치를 기준으로 유가불용품과 무가불용품으로 구분한다.

3.1 보관

구분	정의	주요품목	보관책임
유가불용품	중고 재사용이 불가하나 처리비 대비 자원/부품(재활용) 매각가치가 높아 지역물류로 반납되는 물자	동케이블, 단말 등	보관기관
무가불용품	유가불용품 이외 물자	광케이블, 가전/가구류 등	보관기관

3.2 유가불용품 종류

KT 내외부에서 물자 고유의 용도로 재사용이 불가하여 자원 재활용 또는 부품 재활용 목적으로만 매각처리가 가능한 유가불용품만을 구매지원센터로 반납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기관은 유가불용품 반납 전 자체 재사용, 중고품 상태에서의 매각 등 자산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4. 유가불용품 처리

불용 결정된 품목은 매각, 기증, 무상증여, 폐기, 해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며, 매각(자원/부품 재활용 목적), 폐기, 해체 처리 품목과 지정폐기물로 관리 중인 품목(젤리CA, 축전지), 지정폐기물로 의심되는 품목(유입식 기기류 등)의 운반, 보관, 배출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한다..

폐기물 관리 지침

5. 처리 방법

5.1 매각

중앙/지역 매각부서에서 회사 전략과 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협력사를 선정하여 적절히 시행한다.

가. 매각부서

중앙매각부서, 지역매각부서에서 단가계약, 총액계약 등으로 매각 시행

나. 협력사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품의 적정 처리를 위해 협력사 별도 지정 가능
- 협력사는 회사 전략과 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선정

5.2 기증

가. 대상 품목 : 회사의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기증이 필요한 품목

나. 처리방법

- ①기증가능 여부 협의
- ②기증요청(기증 목적, 수량 등)
- ③기증처로의 배송
- ④기증내역 관리(일시, 부서 수량 등)

5.3 무상증여

가. 대상품목

- 매각되지 않는 품목 또는 매각될 전망이 없는 품목
- 매각하는 것이 회사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품목
-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품목
-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
- 기타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폐기물 관리 지침

나. 처리방법

- ①기증가능 여부 협의
- ②기증요청(기증 목적, 수량 등)
- ③기증처로의 배송
- ④기증내역 관리(일시, 부서 수량 등)

5.4 폐기

가. 대상품목

- 변질, 부패, 기타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 매각 또는 기증하는 것이 회사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나. 처리 방법

변질, 부패, 기타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는 품목은 폐기처리 한다.

5.5 해체

가. 대상품목

품목의 형태가 원형으로 매각하는 것보다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나. 처리 방법

대상 품목 선정 및 처리

폐기물 관리 지침

6.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6.1 활동 데이터 수집

전사 폐기물을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로 분류하여 수집

6.2 배출계수 결정

- 각 폐기물 별 성상 확인
-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정보망을 확인하여 각 폐기물별 배출계수 결정

6.3 배출량 산정

- 폐기물 배출량 및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6.4 검증

- 총괄 담당자가 검증업체를 지정하여 배출량에 대한 검증 시행 및 최종 보고

V 협력사 환경경영 지침

(Supplier Environmental Guideline)

1. 협력사 환경경영 원칙
2. 환경경영시스템
3. 환경성과평가
4. 기후변화
5. 용수
6. 폐기물의 재활용

1. 협력사 환경경영 원칙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물 부족 등의 리스크는 인류의 영속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은, 모든 사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KT는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통해 이러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협력사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의 책임 외에도 환경적 요소는 기업의 비용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이슈는 오랜 기간 "비재무적"(extra-financial) 요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천연 자원은 유한하며 최근 글로벌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보아 천연 자원 및 원자재 구입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비용의 상승폭은 알 수 없으며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거나 원자재, 에너지 및 용수 구입 비용의 현저한 상승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KT는 상호 비용 절감을 위해 협력사가 자원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관리 및 측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2.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을 위한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KT 는 협력사가 환경관리시스템의 평가를 통해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물품과 서비스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관련된 자원의 비용을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KT 가 권장하는 환경경영 모범사례는

- ✓ 책임: 조직 전반(본사, 공장)에 환경경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 환경영향평가: 협력사의 사업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합니다.
- ✓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수준 및 외부 인증(ISO 14001)을 관리합니다..
- ✓ 환경교육: 담당자에게 환경 교육을 제공합니다.

협력사 (최소) 실천요구사항 :

협력사는 모든 사업지역의 관련 환경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심각한 환경기준 위반 사례 발생 시, KT와의 거래중단의 근거가 됩니다.

3. 환경성과평가

“측정될 수 있는 것만이 관리된다”는 말 처럼 자원 이용도 및 오염도를 측정 하여야만 효율성 개선의 기회가 파악됩니다. KT는 협력사가 환경 영향과 자원이용도 측정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를 개선 할 것을 권장 합니다

KT가 권장하는 환경경영 모범사례는

- ✓성과 측정: 자원 사용량, 에너지, 용수, 원자재,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량을 측정합니다.
- ✓ 폐수, 배출가스 및 기타 대기 배출량의 오염도를 측정함으로써 사업장 환경을 관리합니다.
- ✓ 측정 빈도: 환경 성과 및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합니다.
- ✓ 데이터 관리 시스템: 중앙집중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환경 성과 데이터를 취합해 측정, 추산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최소) 실천요구사항 :

협력사는 환경 성과 데이터를 수집 하여야 합니다.

2014년부터는 특히 협력사의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용수 사용량 정보 수집을 의무화 합니다

4. 기후변화

KT 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기후변화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줄이고자 철저한 측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파트너 역시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KT 가 권장하는 환경경영 모범사례는

- ✓ 사업 운영과 제품/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노력합니다.
-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공신력 있는 국내외 기준(GHG 프로토콜)에 따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 ✓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 및 목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정량화된 연간 및 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최소) 실천요구사항 :

협력사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현행 및 향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4 년부터 KT 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5. 용수

물은 모든 생명의 기원입니다.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절약에 동참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KT는 협력사가 이러한 책임을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KT가 권장하는 환경경영 모범사례는

- ✓ 물 사용량 저감을 위해 노력 합니다.
- ✓ 사업활동에서 사용한 물 사용량을 집계합니다.
-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도 측정 활동을 합니다.

협력사 (최소) 실천요구사항 :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 및 보호와 관련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6. 폐기물의 재활용

원자재 사용 및 환경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KT는 협력사가 원자재 사용량을 절감하고,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KT가 권장하는 환경경영 모범사례는

- ✓ 폐기물 분리 설비를 운영합니다.
- ✓ 전체 폐기물량 대비 재활용량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협력사 (최소) 실천요구사항 :

협력사는 폐기물 취급(재활용/매립)과 관련된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VI 밸류체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Value Chain GHG Emission Calculation Guideline)

1. 총칙

2.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1. 총칙

1.1. 산정 배경

지난 100년간 전 지구의 온도는 0.7°C 상승(우리나라는 1.7°C 상승) 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해수면의 상승, 야생동식물의 멸종 등 기후변화가 전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구환경 규범을 이행토록 요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및 협약이 강화되고, 국내 에너지 및 기후변화 규제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녹색금융시장이 성장하고, 이해관계자 탄소정보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해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다소비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2010년 기준 세계 7위에 이르러, 국제사회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기후변화정책이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의 감축 목표에 따라 설정·구축되어, 기업의 배출량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음. 이에 따라 최근 기업 내부적 감축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및 물류, 사내 임직원,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저감할 수 있는 선도적 관리체계와 성과가 요구되고 있으며, 당사도 이런 대외적 내부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주식회사 KT는 강제적 규제 대응에서 자발적 탄소관리체계 도입을 위하여 협력업체, 제품 및 서비스 사용, 임직원 출퇴근 및 출장 등으로 대표되는 Scope 3의 탄소배출량 및 사회적 감축량 산정 방법을 정립하고 그 값을 산정함으로써 미래 기후-에너지 시장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함.

이를 위해 KT의 Scope3 탄소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KT 내부의 자발적 탄소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본 지침서는 KT의 Scope3 탄소배출량 산정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총칙

1.2. 목적

주식회사 KT는 Scope3 배출량 관리를 통해 당사 내부의 자발적 탄소관리체계를 공고히 하여 탄소경영에 대한 내부 인식 제고 및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기업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경영의 리더십을 확보해, 국내외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추구하고자 함.

본 지침서는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실무자(총괄 담당자, 부문 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음.

1.3. 적용범위

Scope3 배출이란,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조직경계 밖에서 일어나, 기업의 통제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배출을 의미하며, 규제와는 관계없는 자발적인 관리 범위임.

당사는 Scope3 배출 중 협력사 물품 공급 단계의 배출량(공급망 단계), 소비자의 물품/서비스 사용 단계의 배출(사용 단계), 사원들의 출장·출퇴근·사내 발생 용수 및 폐기물 처리과정의 배출량(기타 Scope 3)를 관리 대상의 범위로 설정하고, 본 지침을 통해 산정·관리함.

2.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2.1. 책임과 권한

당사의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각 조직별 역할을 정립하여 각 담당자 별 업무와 역할을 구분함.

2.1.1. 최고환경책임자(Chief Env. Officer)

전사 환경경영에 대응하는 최고책임자로, 본 scope3 배출량 산정의 수행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의 지원과 승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

- Scope3 배출 산정 추진 조직 구성 및 관리
- 추진 조직의 인적 자원 확보
- 추진 조직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제공
- 내·외부 보고 및 검증 결과 최종 확인

최고환경책임자는 Scope3 배출량 산정 및 추진 조직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책임 및 권한을 실무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2.1.2. 실무 책임자

전사 Scope3 배출량 산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scope3 배출량 산정시 수행 추진조직의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

- 추진 조직 운영
- 인적자원 배치 및 관리
- 각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검토
- 기타 기후변화 대응 위원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2.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2.1.3. 총괄 담당자

총괄 담당자는 Scope3 배출량 산정의 실무 실행을 총괄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 산정 관리, 검증 대응, 보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

- 산정 계획 수립
- 부문 담당자에게 데이터 수집 요청
- 산정량, 근거 자료 취합 및 산정량 검토
- 외부 검증업체 선정 및 검증 대응
- 검증 결과 확인
- 대 내·외 상황변화에 따른 관리 매뉴얼의 개정
- 산정 내용 보고

2.1.4. 부문 담당자

부문 담당자는 각 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인 이상이 지정될 수 있으며, 해당 부문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부문에 따른 별도의 책임과 권한을 가짐.

- 공급망·사용 단계 부문
- 기타 Scope 3 부문

2.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2.2.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절차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하며, 공급망 단계, 사용 단계, 기타 Scope3로 구분됨.

2.2.1. 배출량 산정 계획(1월 1~2주, 총괄 담당자)

총괄 담당자가 최고환경책임자(또는 실무 책임자)로부터 연간 환경경영계획 및 조직 구성의 내용을 전달받은 후, 해당 연도의 당사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산정 계획을 수립함.

전 모듈 공통으로 진행하며,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산정 내용 및 담당자 내역을 참고하여 담당자들에게 산정 계획을 전달함.

2.2.2. 검증기관 지정(1월 3~4주, 총괄 담당자)

총괄 담당자가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을 담당할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검증 일정을 조율함.
전 모듈 공통으로 진행함.

2.2.3. 산정 대상 선정(2월 1~2주, 부문 담당자)

공급망 단계, 사용 단계 부문 담당자가 매뉴얼 상의 '대상 선정' 과정을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산정 대상이 되는 업체, 제품, 서비스 등을 선정함.

2.2.4. 시나리오, 로직, 배출계수 설정(2월 3~4주, 부문 담당자)

공급망 단계, 사용 단계 부문 담당자가 매뉴얼 상의 '산정 시나리오, 로직, 계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산정 로직, 시나리오 등을 수립하고, 배출계수를 설정함.

2.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2.2.5. 데이터 수집 및 값 산정 완료(3월 1~4주, 부문 담당자)

각 부문 담당자가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활동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산정이 완료된 후 총괄 담당자에게 송부함.

전 모듈 공통으로 진행함.

2.2.6. 산정량 검토 및 검증 대응(4월 1~2주, 총괄 담당자)

총괄 담당자가 각 부문 담당자가 입력 및 산정한 내용을 종합하여 전체 산정 값을 확인한 뒤, 산정 근거 자료를 취합하여 검증에 대비함.

전 모듈 공통으로 진행함.

2.2.7. 검증 완료 및 보고(4월 3~4주, 총괄 담당자)

총괄 담당자가 검증 대응을 완료하고, 검증된 배출량 내용을 최고환경책임자(또는 실무 책임자)에게 보고함.

전 모듈 공통으로 진행하고, 해당 연도의 scope3 배출량 산정을 완료함.

VII 유통물류 환경경영 지침

(Logistic Environmental Guideline)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관리
5. 운영신청 및 기록
6. 배출가스 관리

유통물류 환경경영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 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차량(이하 "기동장비"라 한다)의 공급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므로서 기동장비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기동장비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적용한다. 다만 법령, 사규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한다

3. 용어의 정의

①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차량으로서 자동차와 이륜차(원동기 부착)를 말하며 기능 및 용도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승용차
2. 승합차
3. 화물차
4. 특수차
5. 이륜차

② "취득"이라 함은 회사가 신규로 구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회사의 자산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비"라 함은 기동장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명연장 및 안전운행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를 말한다.

유통물류 환경경영 지침

4. 관리

- ① 기동장비의 소요판단, 취득, 증차, 대체, 이체, 폐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다.
- ② 기동장비의 등록은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명의로 하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기재란에 당해 운용기관명, 주소,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운행신청 및 기록

- ① 기동장비 담당운전원(정,부 포함)으로 지정된 자가 상시 업무수행을 위해 운행시는 차량사용 신청서 작성을 생략하고 운행결과(운행기록 및 안전점검)를 전산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담당운전원(정,부 포함)이 아닌 경우 운용부서장에게 사전승인을 득하여 기동장비 안전운행 준수 및 운행기록을 하여야 한다.
- ② 기동장비 운행 후 운전원은 주행거리 적산계에 의한 운행구간, 주행거리 및 주유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6. 배출가스 관리

배출가스는 법령에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하여 운행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내지 제38조, 제57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VIII 사회적 감축량 산정 지침

(Social Impacts of Carbon Emissions Guideline)

1. 감축량 산정 계획
2. 검증기관 지정
3. 산정결과 검토 및 검증 대응
4. 검증 완료 및 보고

사회적 감축량 산정 지침

1. 감축량 산정 계획


- 총괄 담당자가 최고환경책임자(또는 실무 책임자)로부터 연간 환경경영계획 및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음.
- 총괄 담당자가 전달 받은 조직 구성 내용에 따라 'R&R' 시트의 담당부서, 담당자명 및 담당자 인적사항을 수정함.
- 총괄 담당자가 전달 받은 환경경영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당사 사회적 감축량 산정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함.

2. 검증기관 지정

- 총괄 담당자가 사회적 감축량의 검증을 담당할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검증 일정을 조율함.

IKT Scope 3 배출/감축량 산정 매뉴얼 검증기관

배출량/감축량 산정 내용을 검증할 기관에 대해 기록



계약 검증 기관

#	계약일	검증 기간	검증 기관 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비고
1	YYYYMMDD	MMDD-MMDD	00000	000	000-0000-0000	0000@00000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사회적 감축량 산정 지침

3. 산정결과 검토 및 검증 대응(모듈별 산정 과정-3.2~3.5-이 모두 끝난 후 진행)

- 총괄 담당자가 각 부문 담당자의 산정 내용 및 산정 근거 자료를 수령하여 취합함.

IKT Scope 3 배출/감축량 산정 매뉴얼] 배출 및 감축량 요약		olleh G				
내부 점검 checklist						
2	구분	점검 항목	확인			
수집 현황	1.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가 취합되었는지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입력된 데이터가 산정 해당 연도의 데이터가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데이터	3. 입력된 데이터가 1년 단위로 취합된 값이 맞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재공유형', '협력업체명', '순위', '서비스 명' 등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데이터 순위(1,2,3)의 분류가 제대로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산정량	6. 산정된 결과가 과소/과대하지는 않는가? *참고 -국가 감축목표량: '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인 약 244백만 tCO2 -KT 사업장 전체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1년도 KT Scope 1&2 배출량 1,173천 tCO2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배출량/감축량 개별값과 총계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산정 결과의 단위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공급망 단계 배출량 요약						
1		1순위	2순위	3순위	계	
구매전락실	총계	- tCO2e/년	24 tCO2e/년	- tCO2e/년	24 tCO2e/년	- tCO2e/년
	교환/BCN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선기자재	- tCO2e/년	24 tCO2e/년	- tCO2e/년	24 tCO2e/년	- tCO2e/년
	전송/전동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전원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이동통신(A)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미디어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단말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초고속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기타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 tCO2e/년

사회적 감축량 산정 지침

- ① 총괄 담당자가 '배출 및 감축량 요약' 시트에 모듈 별로 산정 값이 요약된 내용을 확인함.
- ② 총괄 담당자가 '배출 및 감축량 요약' 시트의 Checklist를 활용하여 올바르게 산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함.
- 총괄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감축량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거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각 부문 담당자에게 재산정 및 재송부를 요청함.
- 총괄 담당자가 산정값과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 검증에 대비함.

4. 검증 완료 및 보고

- 총괄 담당자가 검증에 대응함.
 -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함.
 - 시정조치 사항에 대응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수정함.
- 검증기관이 검증을 완료한 후, 총괄 담당자가 검증 보고서를 수령함.
- 총괄 담당자가 검증 보고서 및 관련 내용을 최고환경책임자(또는 실무자)에게 보고함.

IX 배출권 통합 및 분배 지침

(M&A Emission Management Guideline)

1. 인수 및 합병
2. 매각 및 분리
3. 폐쇄
4. 일시 중지

배출권 통합 및 분배 지침

1. 인수 및 합병

1.1 정의:

관리업체가 이행연도 내 타 관리업체, 비 관리업체의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비 관리업체가 이행연도 내 타 관리업체의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조직경계 변동이 발생한 것을 의미함

1.2 (조정방안 1) KT가 타 관리업체 또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사업장, 배출시설을 인수

-KT 배출허용량에 피인수 사업장,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을 가산하여 이행실적 평가

1.3 (조정방안 2) KT가 비 관리업체 또는 배출권 할당 비대상업체의 사업장, 배출시설을 인수

-배출권 조정은 없으며, 인수한 비 관리업체 사업장 및 배출시설은 다음 계획기간 평가 대상에 반영

1.4 (조정방안 3) KT 자회사(비관리업체)가 관리업체 또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사업장, 배출시설을 인수

- 피인수 관리업체 해당분만 평가, KT 자회사의 배출량은 다음 계획기간에 평가

배출권 통합 및 분배 지침

2. 매각 및 분리

2.1 정의 :

관리업체 또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이행연도 내 사업장, 배출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법적으로 분리하여 조직경계 변동이 발생한 것을 말함

2.2 (조정방안 1) KT가 타 관리업체 또는 비 관리업체에 사업장, 배출시설을 매각

-KT의 총 배출권에서 매각·분리대상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이행연도 배출권을 감산하여 평가

2.3 (조정방안 2) KT가 법인을 분리하여 신설법인 설립

-KT의 배출권을 분리된 업체별로 재설정하여 각각 평가

3. 폐쇄

3.1 정의:

관리업체의 이행연도 내 배출시설 또는 설비군*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제외되거나 폐쇄신고가 완료된 경우를 말함

3.1 (조정방안 1) 배출시설 폐쇄의 경우 KT의 이행연도 배출권에서 폐쇄가 발생한 배출시설의 배출권을 감산

•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는 단위(지침 제2조)

3.2 (조정방안 2) 설비군 일부 폐쇄의 경우 기준연도 설비군 배출량 산정 지표*에서 이행연도 지표 비율을 반영하여 배출허용량을 감산

배출권 통합 및 분배 지침

4. 일시 중지

4.1 정의:

목표설정 당시의 기준연도 배출량 15,000톤* 이상인 배출시설이 이행연도 내 시설 또는 설비군의 일부가 일정기간(연속 30일 이상) 가동이 중지된 경우를 말함

* 업종 특성에 따라 관장기관에서 배출량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적용 가능

4.2 (조정방안 1) 기준연도 배출시설 가동기간에서 중지기간 비율*을 반영하여 배출허용량을 조정

* 설비군의 경우 '폐쇄' (조정방안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

PEOPLE. TECHNOLOGY. 